◉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7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전체	AA111 등 176종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40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체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명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세기준에 관련 내용 반영	AA111 등 (총 176종)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 **가스용 콕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정(AA334)**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설계단계검사와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분리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규정 ○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설계단계검사 검사항목의 검사데이터 수 명확화(AA340)** - 설계단계검사 재료 성능에 관한 검사데이터 수를 다른 퓨즈콕 상세기준과 정합화 ○ **정압기용 필터 정기품질검사 기준 합리화(AA433)** - 용접성능 기준 중 용접부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양산품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품질검사 기준에서 제외 ○ **액화석유가스 조정기 정기품질검사 기준 합리화(AA434)** - 조정기 정기품질검사 시 양산품의 파괴없이 시험 가능한 항목만 검사하도록 정기품질검사 항목 합리화 ○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정(AA534)**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설계단계검사와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분리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규정 ○ **타 법령 용어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 부합화(AA632)** -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법률명 변경)을 상세기준에 반영	AA334 AA340 AA433 AA434 AA534 AA632 (총 6종)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 **로케팅와이어 등 PE배관 매몰 설치 기준 명확화** - PE배관의 매설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 보호포 및 로케팅와이어의 설치 기준을 명확화 ○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합리화(FS551)** - 융착기의 열판 온도와 유압 및 배관 고정부 이동거리 등을 출력물 또는 경고음 등으로 확인하도록 개선 - 융착기 가열유지 시 배관의 열판 떨어짐 여부를 확인하고 융착결과물에 대한 임의 수정을 방지하도록 시험기준 신설 ○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명확화(FS551)** - 융착기 열판의 손상여부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화하고, 코팅상태 확인 방법 및 온도 측정시기를 명확화 ○ **중복문구 수정 등 기준 정비(FS551)** -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중복문구 수정, 별첨명 명확화 등 상세기준의 미비사항 수정	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GC252 GC254 (총 7종)

	○ **승압방지장치 설치대상 합리화(FS551)** - 건물 높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가스의 압력이 연소기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도 승압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대상 합리화 ○ **전위측정용 터미널의 정기검사 대상 합리화(FS551)** - 원격전위측정용 터미널(T/B) 사이에 기설치된 일반 T/B는 사업자가 유지관리는 하되 법정 정기검사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기준 합리화 ○ **가스차단장치의 정기검사 대상 명확화(FS551)** - 가스차단장치 정기검사 시 노출형 밸브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문구 명확화 ○ **건축물 내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시행규칙 등과 부합화(FS5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흡수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관의 기준과 부합화하고 건축물 내 설치된 수직배관은 신축흡수조치를 하도록 적용범위 등의 문구를 명확화 ○ **비파괴시험 공정 대상 배관의 시공감리 구간 명확화(GC252)** - 비파괴시험 공정 확인을 위한 배관에 대한 감리는 그 목적에 따라 배관의 길이뿐만 아니라 해당 감리 구간의 비파괴 촬영개소도 20% 이상 실시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화 ○ **시공감리 항목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부합화(FP551, FP552, FP553, FP55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공감리 시 확인할 수 없는 점검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 ○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GC25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등급 재판정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	
가스도매사업	○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방법 명확화(FP451)** - 「LNG 저장탱크 안전등급 기준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 방법을 명확화 ○ **해저터널 내 배관설치 기준 마련(FS45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해저터널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신설 ○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 문구 명확화(FS452)** -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 가스공급시설의 대상을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로 명확화	FP451 FS451 FS452 (총 3종)

	○ **공지의 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상 필요한 조치방법 명확화(FP451, FS451)** - 제조소 및 공급소 등에서 노출된 배관 양측에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화 ○ **시공감리 항목 정비(FP451, FS451)** - 시공감리 항목 중 시공감리 시 확인할 수 없는 점검 내용을 삭제 ○ **용기등 및 가스용품 내압시험 방법 명확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 및 가스용품에 대한 내압시험을 합격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고압가스 제조·충전	○ **해저터널 내 다수의 고압가스 배관 설치 기준 신설(FP111, FP112)** - 해저터널 배관을 통한 고압가스 공급 수요 발생에 따라 해저면 아래 구조물 안에 설치되는 배관기준 신설 ○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도입 기준 신설(FP112, FP113, FP211)** - 고압가스 시설 및 사업소 내 배관에 대한 시공능력 우수 인정업체에 대한 기밀시험·중복검사 면제제도 신설 ○ **혼합 독성가스의 시험절차에 관한 국제기준 인용규정 명확화 (FP111, FP112, FP211)** - 혼합 독성가스의 시험방법(KS B ISO 10298)의 인용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기준에 관련 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규정 명확화 (FP111, FP112, FP211)**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구의 안전인증에 관한 조항이 “제34조”에서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세기준에 반영 ○ **적재함 재질 및 강재표기법 변경(GC206)**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강재표기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세기준에 동일하게 반영 ○ **미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 관리 강화(GC207)** - 고압가스 운반차량 내부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증명서와 교육 이수증 게시 또는 비치 의무화	FP111 FP112 FP113 FP211 GC206 GC207 (총 6종)